

# 實効保護率測定에 있어서의 關稅와 租稅의 非同一性

—終着地課稅原則을 中心으로—

韓 昇 洙\*

〈目 次〉	
I. 序 論	V. 關稅와 間接稅의 同一性和 非同一性
II. 國際적으로 交易되는 商品에 賦課되는 租稅原則	IV. 實効保護率計算에 있어서 附加價値稅의 取扱
III. 實効關稅保護率	
VI. 實効租稅保護率(혹은 「反」保護率)	

## I. 序 論

實効關稅率에 관한 理論과 經驗的 資料를 處理한 計算方法이 學界에 紹介된지 벌써 10餘年이 넘었다. (1) 이러한 實効關稅理論의 骨子는 이미 20世紀初葉에 科學的 關稅의 概念으로 알프레드 마샬에 의하여 展開되었던 것은 밝혀진 바 있다. (2) 지난 10餘年동안 이러한 實効關稅理論의 展開는 關稅의 國內産業保護效果 分析方法을 劃期的으로 發展시켰다. 물론 關稅가 國際市場價格과 國內價格間에 쉐기(wedge)로서 國際分業 혹은 國際資源配分の 最適을 沮害하는 要素로서 理解되었던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關稅의 名目的 效果에 대한 分析의 結果에 不過했다. 實効效果의 分析은 해당産業의 實質的 保護度도 비교적 正確하게 나타내 주었고 또 그 쉐기效果의 平均偏差가 名目的 效果의 그것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

(1) 理論的 貢獻은 H.G. Johnson, "The Theory of Tariff Struct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World Trade and Development," in H.G. Johnson and P.B. Kenen, *Trade and Development* (Libraire Droz, Genève, 1965) pp. 9-29. 이 理論을 이용한 經驗的 資料處理는 G. Basevi, "The United States Tariff Structure: Estimates of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 of United States Industries and Industrial Labou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66, pp. 147-60.  
 (2) 韓昇洙, 「科學的 關稅」, 『貿易研究』, 第5卷 第4號, 1973, pp. 48-49.

이러한 實効保護率測定過程에서 關稅와 비슷하게 効率的 資源配分을 沮害하는 要素로서 租稅의 保護效果가 研究對象이 된 것은 당연하였다.

關稅가 國際的 側面에서 効率的 資源配分을 沮害한다면 租稅는 國內的으로 効率的 資源配分을 沮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資源의 効率的 配分을 沮害하는 過程에서 關稅와 租稅가 비슷하게 特定産業을 保護하는 메카니즘으로서 役割을 할 수 있다는 可能性이 問題로 提起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正確한 數式을 提示하지는 않았으나 코든(W.M. Corden)은 實効保護率測定에 있어서 關稅와 間接稅의 非同一性を 언급한 바 있다.<sup>(3)</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租稅 특히 間接稅가 國內産業을 保護하는지 혹은 「反」保護(anti-protection)하는지 與否에 대한 經驗的 分析은 그루벨(H.G. Grubel)과 존슨(M.G. Johnson)의 研究가 嚆矢를 이루고 있다.<sup>(4)</sup> 이들의 研究는 財政學的 側面에 대한 考察이 缺如되어 있는 것이 短點이라 할 수 있다.

本論文은 實効保護率測定에 있어서 關稅와 租稅의 同一性(equivalence)과 非同一性(non-equivalence)을 究明하여 이러한 差異가 實効保護率測定에 미치는 影響을 다루고자 한다.

## II. 國際的으로 交易되는 商品에 賦課되는 租稅原則

일반적으로 關稅의 對象은 國際的으로 交易되는 商品이 되고 있으나 租稅는 第一次的으로 國際間 資源配分보다는 國內資源配분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交易商品의 對象이 되는 國內租稅의 形態는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나 傳統的 方法으로 大別한다면 直接稅와 間接稅로 區分될 수 있을 것이다. 直接稅의 경우는 그 稅가 商品價格에 轉嫁되지 않는다고 假定하는 것이 一般的이며 따라서 이러한 租稅가 國內資源配분에 미치는 第1次的 效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5)</sup>

間接稅의 경우 일반적으로 租稅는 모두 轉嫁되어 商品價格에 反映된다고 假定되며 이렇게 間接稅로 인한 相對價格의 變化는 國內資源配분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國內的 理由에서 賦課된 間接稅가 國際的으로 交易되는 商品의 경우 어떻게 適用되어야 할 것인가에

(3) W.M. Corden, "The Structure of Tariff System and the Effective Ra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ne 1966, p. 224.

(4) H.G. Grubel and H.G. Johnson, "Nominal Tariffs, Indirect Taxes and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 The Common Market Countries, 1959" *Economic Journal*, 1967, pp. 761-76.

(5) 물론 이것은 部分均衡의 分析의 結論일 뿐이며 一般均衡的 分析方法을 採擇한다면 이러한 結論도 修正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I.M.D. Little, "Direct vs. Indirect Taxes", *Economic Journal*, 1951, p. 577.

대하여는 두가지 課稅原則이 있다.

첫째가 原產地課稅原則(origin principle of taxation)이다. 이 原則이 適用되는 경우 商品(X財)은 生産國(A國)에서 賦課된 租稅를 負擔하고 輸出되어 그 商品의 消費國(B國)에서 X財의 價格은 A의 租稅를 負擔한 價格으로 販賣消費된다. 물론 原產地課稅原則下에서는 B國에서 X財에 대해 租稅를 賦課하지 않으며 B에서 生産되어 A로 輸出되는 Y財에 대하여 B의 間接稅가 賦課된다. 原產地課稅原則에 여러가지 利點이 없는마도 아니거니와 이러한 課稅原則下에서는 A國과 B國의 稅率이 同一하지 않는 한 A國에서 生産되어 B國으로 輸出된 X財(혹은 B國에서 A國로 輸出되는 Y財)는 B國(혹은 A國)에서 生産된 競爭의 財貨와 B國(혹은 A國)에서 中立的 取扱을 받지 못하는 短點이 있다.

둘째가 終着地課稅原則(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이다. 이것은 商品의 生産國과 관계없이 財貨가 輸入되면 그 商品이 最終적으로 消費 혹은 使用되는 消費國(B國)에서 租稅 對象이 되는 原則이다. 國家間的 經濟的 同質性이 낮고 經濟的 關係가 緊密하지 못할수록 이 原則이 適用될 餘地는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課稅原則下에서는 輸入되는 財貨에 대해서는 소위 補完的 輸入稅(compensatory import tax)인 國內稅率을 適用하며 輸出되는 財貨에 대해서는 國內에서 負擔한 稅額을 還給하여 준다. 이러한 終着地課稅原則은 GATT規定 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6)</sup>

따라서 終着地課稅原則이 適用될 때 間接稅와 關稅의 差異는 關稅는 國內에서 生産된 財貨와 輸入品간에 差別的 價格效果를 誘發시키는데 반하여 間接稅는 價格效果面에서 國內產品과 輸入品에 대하여 中立的이라는 사실에 있다.

### III. 實効關稅保護率

投入產出體系를 利用하여 實効關稅保護率을 測定하는 方法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表示되고 있다. 우선  $V_j$ 를  $j$ 産業에 있어서 附加價値,  $\sum_{i=1}^n M_{ij}$ 를  $j$ 産業生産에 必要한 中間財( $i=1 \dots n$ ), 그리고  $S_j$ 를  $j$ 産業의 總販賣高로 表示한다면 附加價値는 다음과 같이 投入產出表에서 구할 수 있다.

$$S_j = \sum_{i=1}^n M_{ij} + V_j \quad (1)$$

그러므로

(6)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第2章 3節 및 16節

$$V_j = S_j - \sum_{i=1}^n M_{ij} \quad (2)$$

그러나 만일 關稅가 存在한다면 上記 式에서 關稅로 인하여 變化된 附加價値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즉  $V_j^*$ 를 關稅가 賦課된 이후  $j$ 産業의 附加價値,  $t_j$ 를  $j$ 産業產品에 賦課되는 關稅,  $t_i$ 를  $j$ 產品生産에 必要한 中間財  $i$ 에 賦課되는 關稅라고 할 때 變化된 附加價値는 다음과 같이 規定할 수 있다.

$$V_j^* = S_j(1+t_j) + \sum_{i=1}^n M_{ij}(1+t_i) \quad (3)$$

實効關稅保護率( $f_j$ )은 關稅가 賦課됨으로 인한 附加價値의 變化率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測定될 수 있다.

$$f_j = \frac{V_j^* - V_j}{V_j} = \frac{S_j t_j - \sum_{i=1}^n M_{ij} t_i}{S_j - \sum_{i=1}^n M_{ij}} = \frac{S_j t_j - \bar{t}_i \sum_{i=1}^n M_{ij}}{V_j} \quad (4)$$

(但  $\bar{t}_i$ 는 中間財에 賦課된 關稅의 平均加重值임)

그러나 現實의으로 關稅없이 自由貿易下에서 形成된 投入產出表의 導出은 不可能하며 모든 나라들의 投入產出表는 이미 存在하고 있는 關稅의 沮害的 資源配分效果를 內包하고 있으므로 實効關稅率의 算出時에 利用되는 自由貿易狀況下 投入產出表는 近似值로서 現存 投入產出表를 關稅率로 디플레이트하여 얻게 된다.

이미 關稅로 인하여 影響받은 附加價値를  $V_j^*$ 라 할때 이것은 既存 投入產出表로 쉽게 表示될 수 있다. 즉

$$V_j^* = S_j - \sum_{i=1}^n M_{ij} \quad (5)$$

따라서 自由貿易下에서의 附加價値를  $V_j$ 라 한다면 이것은 기존 投入產出表를 해당 關稅率로 디플레이트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V_i = \frac{S_j}{(1+t_j)} - \frac{\sum_{i=1}^n M_{ij}}{(1+t_i)} \quad (6)$$

#### IV. 實効租稅保護率 (혹은 「反」保護率)

그러면 關稅없이 國內間接稅만이 存在하는 國民經濟에서 特定産業의 保護與否는 어떻게 測定할 수 있는가? 關稅의 實効保護率의 計算方式과 類似한 方法으로 다음과 같이 導出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間接稅가 없는 경우의 附加價値는 投入產出表의 上記式 (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間接稅가 있는 경우 投入產出表에서 얻어지는 附加價値를  $V_j^{**}$ 로 表示할 때

$$V_j^{**} = S_j(1+e_j) + \sum_{i=1}^n M_{ij}(1+e_i) \quad (5)$$

가 될 것이다.

式 (5)에서  $e_j$ 는  $j$ 産業產品에 賦課되는 間接稅率, 그리고  $e_i$ 는  $j$ 産業生產過程에서 必要로 하는 中間財  $i$ 에 賦課된 間接稅를 意味한다.

關稅와 間接稅가 다같이 價格을 引上시켜주는 效果는 類似하므로 一見 式 (3)과 (5)는 同一하게 보일지 모르나 이와같은 同一性은 表面上 그러할 뿐이다. 왜냐하면 關稅의 경우에는 輸入品の 價格만이 差別的으로 增加되므로  $V_j^*$ 와  $V_j$ 의 差異를 單純히 關稅의 作用에 의하여 緣由된 것으로 計算할 수 있을 것이나 間接稅의 경우에는 終着地課稅原則을 따를 때 輸入品과 國內生産品에 대하여 同率의 稅率을 適用하게 될 것이므로  $V_j^{**}$ 와  $V_j$ 의 差異를 間接稅의 作用에 의하여 緣由된 附加價値의 差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間接稅가 中間財에 賦課되는 경우 關稅와 同等하게 國內產品의 生産費를 增加시켜주는 役割을 하지만 最終財에 賦課되는 경우에는 關稅와 間接稅가 同等하게 그 價格을 差別的으로 引上시키는 것이 아니다. 前者의 경우 輸入과 國內產品間에 差別的 價格效果를 誘發시켜주나 後者의 경우 價格效果는 中立的이다. 따라서 間接稅가 附加價値의 變化率에 미치는 效果 즉 實効間接稅保護率의 測定은 實効關稅保護率의 測定과 概念的으로 다른 方法에 의하여 究明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間接稅의 存在가 附加價値의 變化에 影響을 줄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이 모두 國內産業을 保護하는 效果로 看做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最終生産物에 대한 間接稅는 國內生産品이나 輸入品을 막론하고 同率의 租稅가 賦課되기 때문이다.

中間財에 대한 間接稅의 效果는 中間財의 價格을 引上시켜 國內生産物의 生産費를 增加

시키는 役割을 하지만 이것은 輸入된 財貨의 生産費와 무관할 것이다. 즉 A國內 間接稅의 存在는 輸入對象國인 B國內 間接稅의 存在와 무관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B國의 間接稅가 生産費에 미치는 영향과 獨立的으로 A國內 間接稅의 存在가 A國의 産業保護에 어떠한 實効效果를 갖고 있는나를 究明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實効間接稅保護率의 測定에서 關稅와 租稅사이의 이러한 差異點을 勘案하여야 할 것이다.

間接稅만이 存在할 때 實効保護率은 다음과 같은 方式으로 測定할 수 있을 것이다.

間接稅가 없을 때 附加價値  $V_j$ 는

$$V_j = S_j - \sum_{i=1}^n M_{ij} \tag{1}$$

로 表示된다.

間接稅 ( $e_j$ )가 있을 때 附加價値  $V_j^{**}$ 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方法으로 表示될 수 있다.

$$V_j^{**} = S_j(1+e_j) - \sum_{i=1}^n M_{ij}(1+e_i) \tag{6-가}$$

$$V_j^{**} = S_j - \sum_{i=1}^n M_{ij}(1+e_i) \tag{6-나}$$

(6-가)式은 原產地課稅原則에 立脚한 附加價値의 變化를 求한 投入產出式이며 (6-나)式은 終着地課稅原則에 立脚한 投入產出方式이다. <sup>(7)</sup>

(6-나)式이 나타내 주는 사실은 輸入品도 國內稅  $e_j$ 를 補完輸入稅로 負擔할 것이므로 最終財 단계에 賦課되는  $e_j$ 의 國內外商品에 대한 價格效果가 中立的인 것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現實的으로 國際慣例에 따라 適用되고 있는 終着地課稅原則에 立脚한 實効間接稅保護率( $g_j$ )의 測定方式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g_j = \frac{V_j^{**} - V_j}{V_j} = \frac{S_j - \sum_{i=1}^n M_{ij}(1+e_i) - \left( S_j - \sum_{i=1}^n M_{ij} \right)}{V_j} \\ = \frac{-\sum_{i=1}^n M_{ij} \cdot e_i}{V_j} = -\frac{\sum_{i=1}^n M_{ij} e_i}{V_j} \tag{7}$$

$V_j$ 와  $M_{ij}$ 는 항상 零보다 크며  $e_i$ 도 零보다 크므로 實効間接稅保護率,  $g_j$ 는 항상 零보다 적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興味있는 結果이다. 즉 終着地課稅原則이 適用될 때 間接稅는

(7) 原產地課稅原則에 의한 實効間接稅保護率을 測定한다면 交易對象國의 間接稅構造를 勘案하여야 하므로 매우 複雜한 것이 自明하다.

該當産業을 保護하기 보다 오히려 實質的으로 「反」保護(anti-protection)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다른 條件이 같다고 할때 國內 間接稅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該當産業의 「反」保護의 效果가 커지는 것을 意味한다.

### V. 關稅와 間接稅의 同一性和 非同一性

그루벨과 존슨은 그들의 論文에서 關稅와 間接稅를 同等하게 取扱하고 있다.<sup>(8)</sup> 關稅와 間接稅가 同等하게 取扱된 그들의 研究結果는 그들이 算出한 自由貿易下 租稅中立의 投入產出表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들은 既存 EEC 6個國의 投入產出表를 利用하였는데 關稅와 間接稅가 存在하지 않는 狀況下에서 投入產出表는 中間財와 最終財生產過程을 關稅와 間接稅로서 같이 디플레이트하여 求하고 있다. 즉 그들이 使用한 自由貿易下 間接稅 中立의 投入產出表는 다음과 같다.

$$V_j = \frac{S_j}{(1+t_j)(1+e_j)} - \frac{\sum_{i=1}^n M_{ij}}{(1+t_i)(1+e_i)} \quad (8)$$

물론 이렇게 關稅와 間接稅를 同等하게 取扱할 때 나타나는 實効保護率이 過大評價되어 있음은 自明한 일이다.

이제 實効保護率測定에 있어서 關稅와 租稅의 同一性和 非同一性を 세가지 假定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을 것이다.

가. 關稅와 間接稅가 中間財에 賦課되지 않고 最終財에만 賦課된다고 假定할 때 (즉  $t_i=0, e_i=0, t_j>0, t_j>0$ ):

이러한 경우 그루벨과 존슨 같이 關稅와 間接稅를 同一하게 取扱하고 兩稅率이 同一하다고 假定한다면 實効關稅率과 實効間接稅率은 同一할 것이다.

그러나 關稅와 租稅의 價格效果가 非同一한 終着地課稅原則에 의한다면 實効間接稅率은 零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7)式에서  $e_i=0$ 이 假定되고 있으므로 實効間接稅率  $g_j=0$ 이 될 것이며 이것을 다시 整理하면 表 1과 같다.

나. 最終財에 賦課된 關稅와 間接稅가 中間財가 賦課된 關稅나 間接稅의 加重值와 같다고 假定할때 (즉  $t_j=\bar{t}_j, e_j=\bar{e}_j$ ):

(8) H.G. Grubel and H.G. Johnson, *op. cit.*, p. 763.

表 1. 實効保護率：假定(가)의 경우.

兩稅의 取扱		實効率	
		同一性	非同一性
關稅	稅	$f_j = t_j + \frac{t_j}{v_j}$	$f_j^* = t_j + \frac{t_j}{v_j}$
間接稅	稅	$g_j = e_j + \frac{e_j}{v_j}$	$g_j^* = 0$

註：1.  $t_i=0, e_i=0, t_j>0, e_j>0$ 인 경우  
 2.  $t_j=e_j$ 라면,  $f_j=f_j^*=g_j>g_j^*$

이러한 경우 關稅와 間接稅를 同等하게 取扱한다면 實効關稅率( $f_j$ )은 名目關稅率( $t_j$ )과 같을 것이며 實効間接稅率( $g_j$ )은 名目間接稅率( $e_j$ )과 같을 것이다. 兩稅를 同等하게 取扱하지 않는다면 實効間接稅率( $g_j^*$ )은 零보다 작을 것이다.

表 2. 實効保護率：假定(나)의 경우.

兩稅의 取扱		實効率	
		同一性	非同一性
關稅	稅	$f_j = t_j$	$f_j^* = t_j$
間接稅	稅	$g_j = e_j$	$g_j^* = \frac{-\bar{e}_i \sum_{i=1}^m M_{ij}}{v_j}$

註 1:  $t_j=\bar{t}_i, e_j=\bar{e}_i$

다. 最終財에 대한 關稅나 間接稅는 없으나 中間財에 대한 關稅와 間接稅가 存在할 때 (즉  $t_j=0, e_j=0, t_i>0, e_i>0$ ):

이러한 경우 關稅와 間接稅를 同一하게 取扱하든 非同一하게 取扱하든 모두 實効保護率 이 같을 것이며 이때 모두 陰의 實効保護率을 나타낼 것이다.

表 3. 實効保護率：假定(다)의 경우.

兩稅의 取扱		實効率	
		同一性	非同一性
關稅	稅	$f_j = \frac{-\bar{t}_i \sum_{i=1}^n M_{ij}}{v_j}$	$f_j^* = \frac{-\bar{t}_i \sum_{i=1}^n M_{ij}}{v_j}$
間接稅	稅	$g_j = \frac{-\bar{e}_i \sum_{i=1}^n M_{ij}}{v_j}$	$g_j^* = \frac{-\bar{e}_i \sum_{i=1}^n M_{ij}}{v_j}$

註 1:  $t_j=0, e_j=0, t_i>0, e_i>0$



間接稅와 關稅의 保護效果를 同一하게 取扱하거나 非同一하게 取扱할때 實効關稅率과 實効間接稅率이 같은 方法에 의하여 求해지는 경우는 表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最終財에 대하여서는 兩稅가 存在하지 않고 中間財에 대해서만 兩稅가 存在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그루벨과 존슨이 試圖한 自由貿易下 및 間接稅中立의 投入產出表의 測定(디플레이트)方法이 같을 수 있는 可能性은 이 경우에만 該當된다. 이러한 경우 兩稅率이 같다면 陰의 實効率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中間財에만 賦課되는 關稅나 間接稅는 매우 非現實의이므로 실제로 關稅와 間接稅를 實効保護率測定에서 똑 같이 取扱하여야 될 可能性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9)

## VI. 實効保護率計算에 있어서의 附加價値稅의 取扱

끝으로 EC에서 共同稅로 採擇되어 會員國의 間接稅構造를 調和시켜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間接稅制를 統合하는 一環으로 올해부터 實施하기로 稅法改定을 본 마 있는 附加價値稅의 實効保護率側面을 살펴본다. (10)

附加價値稅의 特徵은 生産 및 分配過程에서 賦課된 稅額을 正確히 把握할 수 있으므로 輸出에 대해 正確한 稅額의 還給이 可能하고 輸入品에 대하여 國內產品에 賦課된 것과 똑 같은 稅額이 補完輸入稅로 賦課되어 그 租稅의 存在가 國際間 資源配分을 沮害함이 없이 中立의 效果를 維持할 수 있는 데 그 特徵이 있다. 이러한 特徵은 곧 바로 實効保護率의 測定에도 影響을 미치고 있다. 즉 附加價値稅制下에서는 間接稅制下에서 나타났던 「反」保護의 現象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附加價値稅가 없을 때의 投入產出表와 附加價値稅가 있을 때의 投入產出表에서 附加價値를 求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V_j = S_j - \sum_{i=1}^n M_{ij} \quad (1)$$

$$V_j^* = V_j(1+r_j) = S_j - \sum_{i=1}^n M_{ij} \quad (9)$$

(9) T.S. Barker and S.S. Han,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 for U.K. Production", *Economic Journal*, June 1941, pp. 283-293. 非同一한 方法에 의한 實効間接稅率의 測定을 參照.

(10) 附加價値稅에 대하여서는 Clara K. Sullivan, *The Tax on Value Added*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65), D. Dosser and S.S. Han, *Taxes in the EEC and Britain; The Problem of Harmonization* (Chatham House and PEP, London, 1968). 그리고 K. Shaw and S.S. Han, "The Economic Effect of Value-Added Tax", *Journal of World Trade Law*, 1970, 10/12, pp. 297 參照.

그러나 終着地課稅原則을 採擇할때 附加價値稅( $r$ )는 輸入財에도 適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賣買段階마다 一定稅率이 賦課되므로 中間生産段階와 最終段階間에도 區別이 없어진다.

따라서 附加價値稅가 賦課된 후 附加價値를  $V_j^*$  즉  $V_j(1+r_j)$ 라고 하더라도 輸入財와 國內財間의 差別이 없게 될 것이므로 概念的으로 實効附加價値稅 保護率의 計算은 다음과 같다.

$$V_j = S_j - \sum_{i=1}^n M_{ij} \quad (\text{附加價値稅賦課以前}) \quad (1)$$

$$V_j' = S_j - \sum_{i=1}^n M_{ij} \quad (\text{終着地課稅原則에 立脚하여 附加價値稅가 賦課된 경우}) \quad (10)$$

혹은  $V_j(1+r_j) = S_j - \sum_{i=1}^n M_{ij} \quad (1-가)$

$$V_j'(1+r_j) = S_j - \sum_{i=1}^n M_{ij} \quad (10-가)$$

그러므로 實効附加價値稅率  $h$ 는 다음과 같다.

$$h_j = \frac{V_j' - V_j}{V_j} = 0 \quad (11)$$

따라서 附加價値의 實効保護率은 零이며 國內産業保護의 側面에서도 附加價値稅는 中立的이라 할 수 있다.